

영등포구의회  
제209회 제1차 정례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재활용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 檢 討 報 告 書

【유 승 용 의원 발의】



2018. 9. 14.

社 會 建 設 委 員 會  
專 門 委 員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재활용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 檢 討 報 告 書

### 1. 경 과

의안 제15호로 2018년 8월 31일 유승용 의원 외 3명으로부터 제출되어 9월 7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됨

### 2. 제안이유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중고물품의 교환과 재사용 가능한 대형폐기물의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재활용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 3. 주요내용

가. 조례 제정 목적 및 정의(안 제1조~제2조)

나. 재활용센터의 설치 및 사업(안 제3조~제4조)

다. 재활용센터 운영의 위탁에 관한 사항(안 제5조)

라. 재활용센터운영위원회에 관한 사항(안 제6조)

마. 재활용센터 위탁 기간, 위탁을 받은 자의 의무 등에 관한 사항  
(안 제7조~제10조)

바. 재활용센터 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11조)

사. 감독에 관한 사항(안 제12조)

#### 4. 참고사항

가. 관련근거: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

나. 예산조치: 별도 조치 필요 없음

다. 입법예고(2018. 8. 24. ~ 8. 30.): 의견 없음

#### 5.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중고물품의 교환과 재사용 가능한 대형폐기물의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재활용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규정하고자 제안된 조례안으로 총 14개의 조항과 2개의 부칙으로 구성됨
- 주요 제정 내용은
  - 안 제1조~제2조에서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규정하였고

- 안 제3조~제4조에서는 재활용센터 설치와 재활용품의 수집, 판매, 수리 및 중고물품 매매 등 주요 사업에 관하여 규정하였으며
- 안 제5조~제6조에서는 효율적인 재활용센터 운영을 위하여 재활용센터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탁운영자를 선정하도록 하였으며
- 안 제7조~제10조까지는 위탁기간, 위탁받은 자의 의무와 의무사항 불이행 등에 따른 위탁의 취소, 사용료 납부에 대하여 규정하였고
- 안 제11조~제12조까지는 재활용센터 사업에 대한 홍보 등 행정적 지원과 감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에서는 중고물품의 교환과 재사용 가능한 대형폐기물의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재활용센터를 설치·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우리구에서도 자원절약과 자원순환 촉진을 위해 현재 2개소의 재활용센터를 운영하고 있음.

○ 본 조례안은 우리구의 자원재활용 활성화를 위하여 설치 및 운영 중인 재활용센터에 대한 위탁운영자 선정을 위한 위원회 구성, 위탁기간, 위탁받은 자의 의무 등의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재활용센터 운영에 있어 투명하고 효율적이며 책임 있는 운영의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안된 조례안으로 조례 제정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며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 관 련 법 령

###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재활용센터의 설치·운영 등)** 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중고물품의 교환과 재사용가능한 대형폐기물의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이하 이 조에서 "재활용센터"라 한다)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②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재활용센터를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별로 한 군데 이상을 설치하여야 하며, 인구가 20만명을 초과하면 그 때마다 한 군데의 재활용센터를 추가로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③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대형폐기물을 수거·선별·처리할 때에는 재활용센터를 우선하여 활용하여야 한다.

###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제27조(대부료의 요율)** ④ 다음 각 호의 재산에 대부료 요율은 해당 재산 평정가격의 1,000분의 10 이상으로 한다.

6.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에 따라 재활용센터를 설치 및 운영하는 경우